

서울특별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홍국표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는 주택공급의 정상화와 시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근거법률인 「주택법」 상의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법」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일부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명칭의 불명확성, 환매 주체의 한정적 허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인 간 전매 금지 등 일부 규정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